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8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무의 효율성 증대와 시민편의를 위하여 건축과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인용법령과 소관부서를 정비함(안 제1조 등).

나. 건축과 소관사무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전기감리자 지정 및 지정제한, 5만㎡ 미만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신고의 접수·승인취소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건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7. 27. ~ 8. 1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 1 인력개발과란 근거법령중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1조”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중 “푸른도시과”를 각각 “공원산림과”로 한다.

별표 3 투자유치팀란을 삭제한다.

별표 3 기업지원팀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기업지원팀	3.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 청 장	
	가. 설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제12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요구 및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다.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라.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같은 법 제18조·제28조·제36조· 제42조		
	마.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중지 명령 및 통보	·같은 법 제2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2조		
	사. 자료제출의 요구	·같은 법 제27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아.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통보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구 청 장	
	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차.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카. 직장폐쇄 신고수리	·같은 법 제46조		
	타.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건축과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건 축 과	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 청 장	
	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국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나.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전기감리 포함), 감리업무 지정 제한	·「주택법」 제2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다. 5만㎡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6조		
	2.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신고의 접수·승인취소	·같은 법 제16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소속기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04조 ---------- ---------- ---------- ---------- ----------

[별표 1]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인력개발과	1. (생략) 2. (생략)	·「지방자치법」 제83조	의회사무처장 〃	

[별표 1]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인력개발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91조	의회사무처장 〃	

[별표 2]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푸른도시과	1. ~ 2. (생략)			

[별표 2]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공원산림과	1. ~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3]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비고
투 자 유치팀	1.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 청 장	
	가. 설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2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요구 및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다.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라.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같은 법 제18조·제28조·제36조·제42조		
	마.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중지명령 및 통보	·같은 법 제2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2조		
	사. 자료제출의 요구	·같은 법 제27조		
	아.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 명령·통보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차.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카. 직장폐쇄 신고수리	·같은 법 제46조		
	타.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개 정 안

[별표 3]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비고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비 고
기 업 지원팀	<신설>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기 업 지원팀	3.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가. 설립·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2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요구 및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다.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라.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같은 법 제18조· 제28조·제36조·제42조		
	마.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중지 명령 및 통보	·같은 법 제2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2조		
	사. 자료제출의 요구	·같은 법 제27조		
	아.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통보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차.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카. 직장폐쇄 신고수리	·같은 법 제46조		
	타.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비고
푸른도시과	1. ~ 3. (생략)			
건축과	1.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국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구청장	
	가. 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나. 감리자의 지정, 감리업무 지정 제한	·같은 법 제24조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신고의 접수·승인취소	·같은 법 제16조		
	3. ~ 5. (생략)			

개 정 안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공원산림과	1. ~ 3. (현행과 같음)			
건축과	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 장	
	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국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나.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전기감리 포함), 감리업무 지정 제한	·「주택법」 제2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다. 5만㎡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6조		
	2.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신고의 접수·승인취소	·같은 법 제16조		
	3. ~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8, 2005.7.13, 2007.1.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7.13, 2007.1.11>

⑥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5.1.8, 2005.7.13>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8>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④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5.3.18,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10.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12.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13.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14.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2006.9.27, 2007.4.11, 2007.4.27, 2007.5.17>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④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18>

⑤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공사감리등) ①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3>

⑥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2005.12.23>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5.12.23>

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6. 6.24 시행>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3>